

의안번호	제 281 호
의 결 연 월 일	2008년 월 일 (제 회)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 출 자	충청북도지사
제 출 연 월 일	2008년 10월 6일

#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 번호	281
----------	-----

제출연월일 : 2008년 10월 9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1. 제안사유

- 보존부적합 재산의 매각으로 인한 재산 감소를 방지하고 집단화 등 도유지의 부가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토지 등을 대체취득하며
-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증가가 예상되는 소방행정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노후되고 협소한 제천시방서 화산119안전센터를 신축이전 하고자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입니다.

## 2. 주요내용

### □ 재산의 취득

#### 《보존부적합 도유지 매각 대체취득》

- 위 치 : 도내 일원
- 매입규모 : 50,000㎡
- 사업기간 : 2009. 1 ~ 2009. 12
- 사업비 : 2,100백만원
- 투자계획 : 2009년도 - 2,100백만원

#### 《제천시방서 화산119안전센터 신축이전》

- 위 치 : 제천시 명지동 강저지구국민임대주택단지 D-3블럭
- 사업규모
  - 부지매입 : 2,774㎡ 970백만원
  - 건물신축 : 지하1·지상2층 826㎡ 950백만원
- 사업기간 : 2009. 1 ~ 2009. 12
- 사업비 : 1,920백만원
- 투자계획 : 2009년도 - 1,920백만원

**3.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 별첨**

**4. 관계법령 : 별첨**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제14조
-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8조



## 2009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7-2)

(단위 : m<sup>2</sup>)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천원)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전소유자 주소성명	비 고
	지목	소 재 지	수 량					
계	토지	2 건	52,774.0	3,070,000				
	건물	1 건	826.0	950,000				
	기타							
1	토지	도내 지역 (세부내역 미정)	50,000.0	2,100,000	2009	재산 대체취득	미 정	
	건물							
	기타							
2	토지	제천 명지 강서지구 국민 임대주택 단지내 D-3블럭	2,774.0	970,000	2009	화산119안전센터 신축이전	대한주택공사 (사유지)	
	건물	"	826.0	950,000	"	"	신 축	
	기타							
3	토지							
	건물							
	기타							
4	토지							
	건물							
	기타							
5	토지							
	건물							
	기타							
	토지							
	건물							
	기타							

# 관계법령발취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p>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 (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p> <p>②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 35조 제 6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p>	<p>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①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양수, 환지, 무상귀속 교환 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출자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p> <p>1.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인 재산. 이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 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하고, 건물 그 밖의 재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건축비 및 시설비로 한다.</p> <p>2. 토지에 있어서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6천제곱미터이상(시·군·자치구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5천제곱미터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이상)인 재산</p>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p>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도지사가 다음 연도 예산 편성전까지 충청북도의회(이하“도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도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p> <p>②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p> <p>제14조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의 작성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28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유재산관리계획서(별지 제15호 서식)</li> <li>2. 공유재산매매계약서(별지 제16호 서식)</li> <li>3. 양여계약서(별지 제17호 서식)</li> <li>4. 공유재산매수요구서(별지 제18호 서식)</li> <li>5. 교환계약서 (별지 제19호 서식)</li> </ol>